



국민건강보험공단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극 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,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산정특례 운영지침
안내

1. 항상 건강보험 업무에 큰 도움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
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

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55호(2018.11.30.)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
일부개정

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81호(2019.12.23.)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
일부개정

다.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급여운영실 2019-제2호(2019.12.24.) “「희귀질환 및 중증
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」 공고”

3. 위와 관련하여 고시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한 극 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, 기타염색체
이상질환 산정특례 운영지침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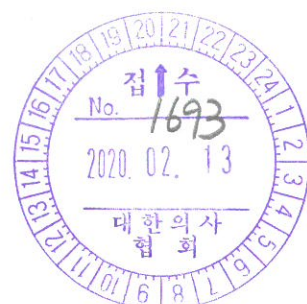
※ 극 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,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은 승인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 가능

가. 주요개정사항: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신설 반영('19.1.1. 확대)

나. 세부내용: '붙임' 참고

※ 본 내용 관련 '붙임' 파일은 요양기관정보마당(공지사항)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붙임 극 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,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산정특례 운영지침 1부. 끝.

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


수신자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의사협회장

대리 윤다솜누리

팀장

채은영

부장

전결 2/12
양호수

협조자

시행 산정특례운영부-310 (2020.2.12.) 접수

()

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, 21층 (반곡동, 국민건강보험공단) / <http://www.nhis.or.kr>

전화 033-736-4648

전송 033-749-9616

/ nuri8896@nhis.or.kr

/ 공개